

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(23.1.1)

□ 배경

-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고,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「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」(이하 ‘지원지침’) 재연장 시행
 - * 적용기간은 ‘2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추후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몰 추진
- 「2023년 경제정책방향」(22.12)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개발비 부담 완화

⇒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매뉴얼 마련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 공백과 연구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연구의 지속성 및 혁신역량 확충

□ 적용범위 및 방법

- 적용부처 :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
- 적용과제 :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(이하 ‘과제’) 중 2020년도 이후 진행 중인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
 - 다만, 정부납부기술료는 2020~2023년도 납부(또는 납부예정) 금액에 대해 적용
- 적용기간 : ‘지원지침’ 적용을 최초 고지한 날(NTIS 기준 ‘20.7.1)부터 적용하되, 개정안은 ‘23.1.1일자로 적용하며, 2023년도에 진행되는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
 - 한편, 추후 다른 감염병의 전세계 확산 등 경제·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발생 시에도 비상 매뉴얼로 활용
- 적용방법 : ‘지원지침’을 참고하여 부처(또는 전문기관)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을 체결(협약 미체결 과제)하거나 변경(협약 기체결 과제)
 - 우선 부처(또는 전문기관)에서 연구개발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고, 부처(또는 전문기관)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

□ 부처별 자체지침과의 관계

- ‘지원지침’은 권고사항이며, 부처(또는 전문기관)는 ‘지원지침’을 참고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관리
- 부처별 자체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지침을 우선 적용

□ 주요내용

가. 과제 공고 및 신청

-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폐쇄,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의 격리 등으로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신청이 곤란할 경우 부처는 과제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
- 과제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,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방법을 적용

나. 과제 선정

- 과제 선정평가는 서면·화상 등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,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평가 실시
-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평가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(이하 ‘혁신법’) 제27조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완화하여 적용

다. 과제 협약·협약변경

- 「혁신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은 전자문서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, 협약당사자의 협의결과에 따라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 방법으로 체결
- 부처(또는 전문기관) 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·내용·기간 등 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「혁신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처(또는 전문기관)와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약을 변경

라. 연구개발비 지급·관리
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이하 ‘사용기준’) 제71조에 따라 과제 선정 통보 이후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연구개발비 선집행을 허용
-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하여 부처는 「혁신법 시행령」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·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

<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>

	일반적 적용	비상 매뉴얼 적용
• 중소기업인 경우	75% 이하	80%
• 중견기업인 경우	70% 이하	좌동
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50% 이하	좌동

<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>

	일반적 적용	비상 매뉴얼 적용
• 중소기업인 경우	10% 이상	10% 이상
• 중견기업인 경우	13% 이상	좌동
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15% 이상	좌동
현금 부담 납부기간	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	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

- 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‘사용기준’ 제65조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·사용 가능
-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*, 감염병 발생에 따라 과제 수행에 불가피 하게 소요된 비용**,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 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 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*** 등을 연구개발비 정산에서 폭넓게 인정
 - * 예: 손세정제, 마스크, 열화상카메라 설치·운영비, 화상회의장 구축·운영비 등
 - ** 예: 기관폐쇄에 따른 연구중단·재개 비용(사전조치 비용 포함) 등
 - *** 예: 출장여비 취소 수수료, 회의 취소 위약금 등
- ‘사용기준’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제적·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·변경되어 발생한 수수료 등 부대비용 인정
- ‘사용기준’ 제23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구입·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해 연구시설·장비비 인정
- ‘사용기준’ 제25조제9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(데이터베이스, 네트워크 포함),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 인정

-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‘사용기준’ 제73조제1항제9호를 적극 적용하여 해당단계에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비(현물은 제외)를 다음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적극 승인
- ※ 단계내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잔액을 부처 승인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
- ‘사용기준’ 제83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의 반납 시기의 연장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반납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

마. 결과 보고 및 성과 평가

- 과제 단계·최종평가, 추적조사는 서면·화상 등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,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평가 실시
-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평가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「혁신법 시행령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완화하여 적용
-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검토항목을 마련하여 단계·최종평가, 추적조사 시 반영

바.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납부기간 연장

- 「혁신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하고, 그 비율·방법 등에 관하여 부처별 특성에 맞게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적용
- 「혁신법 시행령」 제38조제5항에 따라 부처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, 그 기간·방법 등에 관하여 부처별 특성에 맞게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적용